

안 내 말 씀

안녕하세요.

2024년 4월 15일에 개최된 제13기 제1회 휘문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「제13기 휘문고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추천 및 선출 건 등 8건」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리며,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.

회 의 결 과

1. 일시 :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16:30

2. 장소 : 휘문고등학교 본관 2층 회의실

3. 참석인원(참석/정수) : 15명 / 15명

- 학부모위원 : 6명 / 6명 - 지역위원 : 4명 / 4명 - 교원위원 : 5명 / 5명

4. 안건 처리 결과

No.	안건명	처리결과	내용								
1	제13기 휘문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추천 및 선출 건	선출	<p>▷ 주요내용</p> <p>가. 휘문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(단위: 명)</p>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학부모위원</th><th>지역위원</th><th>교원위원</th><th>계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6</td><td>4</td><td>5</td><td>15</td></tr></tbody></table> <p>나. 지역위원 추천대상자: 4명</p>	학부모위원	지역위원	교원위원	계	6	4	5	15
학부모위원	지역위원	교원위원	계								
6	4	5	15								
2	제13기 휘문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건	선출	<p>▷ 주요내용</p> <p>가. 인 원: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</p> <p>나. 대 상: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</p> <p>다. 선출방법: 무기명투표 실시(위원장, 부위원장 각 1회)</p> <p>1) 재적위원(15명) 과반수이상 득표자(8표 이상) 당선</p> <p>2) 과반수이상 득표자 없을 시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</p> <p>3)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.</p>								
3	제13기 소위원회(예-결산, 급식) 구성 건	구성	<p>▷ 주요내용</p> <p>가. 예-결산소위원회</p> <p>1) 위원회 기능</p> <p>- 예-결산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 자료 수집·조사·검토하여 심사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</p> <p>가) 「교비회계 규정」의 예산(안), 결산(안) 심의에 관한 사항</p> <p>나) 「서울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요령」의 사전 검토 사항</p> <p>2) 위원회 구성</p> <p>가)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.</p> <p>나) 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어야 하며, 호선한다.</p> <p>다)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예-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.</p> <p>라) 학교운영위원이 회계관련 전문가 위원을 위촉 또는 자청할 수 있다.</p> <p>3) 위원의 임기: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4) 위원장 등의 직무</p> <p>가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</p> <p>나)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5) 간사: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.</p>								

			<p>나. 학교급식소위원회</p> <p>1) 위원회 역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실무전문위원회의 역할을 담당. <p>2) 위원회 구성: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3명, 영양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위원장은 급식소위원회에서 선정하고, 영양사는 간사로 참여 <p>3)위원의 임기: 학교운영위원회 임기에 준한다.</p> <p>4) 회의소집</p> <p>가)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안건발의 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.</p> <p>나) 회의 종료 후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.</p> <p>5) 활동내용</p> <p>가) 학부모 급식모니터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급식모니터는 학부모회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. <p>나) 급식모니터 운영결과는 개인별로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, 학교장은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급식운영에 반영 및 개선토록 합니다.</p> <p>다) 학부모 급식모니터 요원 활동의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재료의 검수과정 참여 - 조리과정의 참관 또는 참여 - 개인위생, 시설설비위생, 식재료 위생·관리 등 위생관리 실태 공동 점검 - 배식과정의 참관 또는 참여. - 제공된 급식의 검식에 참여.
--	--	--	---

4	<p>휘문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안)</p>	<p>원안가결</p>	<p>▷ 주요내용</p>																								
	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개정안(산)</th> <th>현 행(구) (개정 2024년 2월 23일)</th> <th>개정 사유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p>제1조(목적)</p> <p>이 규정은「초·중등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3조, 「학교법인 휘문의숙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68조에 따라 휘문고등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/td> <td> <p>제1조(목적)</p> <p>이 규정은「초·중등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3조, 「학교법인 휘문의숙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89조에 따라 휘문고등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/td> <td> <p>학교법인 휘문의숙 정관 조항 변경으로 인한 개정.</p> 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 <p>제5장 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</p> <p>제16조(기능)</p> <p>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과 정관 제7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(개)정에 관한 사항은 자문한다.</p> <p>1. 삭제</p> <p>2. 삭제</p> <p>3. 삭제</p> <p>4. 삭제</p> <p>③ 정관 제74조제1항 제11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삭제</p> </td> <td> <p>제5장 운영위원회 자문</p> <p>제16조(기능)</p> <p>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2항과 정관 제86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.</p> <p>1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서를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</p> <p>2.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3. 학부모, 교직원, 학생,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</p> <p>4.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요청한 사항</p> <p>②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.</p> <p>③ 정관 제86조 제1항 제3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 학생의 교육활동·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.</p> <p>④ 제1항 제3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/td> <td> <p>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됨에 따라 규정 조항 문구의 '자문'을 '심의'로 개정.</p> <p>초·중등 교육법 제32조 및 학교법인 휘문의숙 정관 제74조에 이미 기재되어 있으므로 생략.</p> 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 <p>제17조(의견 수렴 등)</p> <p>③ 운영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관계전문가, 관계공무원 또는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인 교직원, 학부모, 학생,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/td> <td> <p>제17조(의견 수렴 등)</p> <p>③ 운영위원회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관계전문가, 관계공무원 또는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인 교직원, 학부모, 학생,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 <p>제18조(건의사항 처리)</p> <p>① 위원장은 제16조 제3항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.</p> <p>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/td> <td> <p>제18조(건의사항 처리)</p> <p>① 위원장은 제16조 제3항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한다.</p> <p>③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/td> <td> <p>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됨에 따라 규정 조항 문구의 '자문'을 '심의'로 개정.</p> 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 <p>제20조(의안의 제출·발의)</p> <p>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,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.</p> </td> <td> <p>제20조(의안의 제출·발의)</p> <p>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,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.</p> 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개정안(산)	현 행(구) (개정 2024년 2월 23일)	개정 사유	비고	<p>제1조(목적)</p> <p>이 규정은「초·중등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3조, 「학교법인 휘문의숙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68조에 따라 휘문고등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</p> <p>이 규정은「초·중등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3조, 「학교법인 휘문의숙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89조에 따라 휘문고등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학교법인 휘문의숙 정관 조항 변경으로 인한 개정.</p>		<p>제5장 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</p> <p>제16조(기능)</p> <p>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과 정관 제7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(개)정에 관한 사항은 자문한다.</p> <p>1. 삭제</p> <p>2. 삭제</p> <p>3. 삭제</p> <p>4. 삭제</p> <p>③ 정관 제74조제1항 제11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삭제</p>	<p>제5장 운영위원회 자문</p> <p>제16조(기능)</p> <p>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2항과 정관 제86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.</p> <p>1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서를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</p> <p>2.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3. 학부모, 교직원, 학생,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</p> <p>4.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요청한 사항</p> <p>②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.</p> <p>③ 정관 제86조 제1항 제3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 학생의 교육활동·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.</p> <p>④ 제1항 제3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됨에 따라 규정 조항 문구의 '자문'을 '심의'로 개정.</p> <p>초·중등 교육법 제32조 및 학교법인 휘문의숙 정관 제74조에 이미 기재되어 있으므로 생략.</p>		<p>제17조(의견 수렴 등)</p> <p>③ 운영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관계전문가, 관계공무원 또는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인 교직원, 학부모, 학생,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	<p>제17조(의견 수렴 등)</p> <p>③ 운영위원회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관계전문가, 관계공무원 또는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인 교직원, 학부모, 학생,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			<p>제18조(건의사항 처리)</p> <p>① 위원장은 제16조 제3항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.</p> <p>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8조(건의사항 처리)</p> <p>① 위원장은 제16조 제3항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한다.</p> <p>③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됨에 따라 규정 조항 문구의 '자문'을 '심의'로 개정.</p>		<p>제20조(의안의 제출·발의)</p> <p>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,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.</p>	<p>제20조(의안의 제출·발의)</p> <p>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,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.</p>		
			개정안(산)	현 행(구) (개정 2024년 2월 23일)	개정 사유	비고																					
			<p>제1조(목적)</p> <p>이 규정은「초·중등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3조, 「학교법인 휘문의숙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68조에 따라 휘문고등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</p> <p>이 규정은「초·중등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3조, 「학교법인 휘문의숙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89조에 따라 휘문고등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학교법인 휘문의숙 정관 조항 변경으로 인한 개정.</p>																						
			<p>제5장 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</p> <p>제16조(기능)</p> <p>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과 정관 제7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(개)정에 관한 사항은 자문한다.</p> <p>1. 삭제</p> <p>2. 삭제</p> <p>3. 삭제</p> <p>4. 삭제</p> <p>③ 정관 제74조제1항 제11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삭제</p>	<p>제5장 운영위원회 자문</p> <p>제16조(기능)</p> <p>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2항과 정관 제86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.</p> <p>1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서를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</p> <p>2.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3. 학부모, 교직원, 학생,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</p> <p>4.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요청한 사항</p> <p>②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.</p> <p>③ 정관 제86조 제1항 제3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 학생의 교육활동·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.</p> <p>④ 제1항 제3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됨에 따라 규정 조항 문구의 '자문'을 '심의'로 개정.</p> <p>초·중등 교육법 제32조 및 학교법인 휘문의숙 정관 제74조에 이미 기재되어 있으므로 생략.</p>																						
			<p>제17조(의견 수렴 등)</p> <p>③ 운영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관계전문가, 관계공무원 또는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인 교직원, 학부모, 학생,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	<p>제17조(의견 수렴 등)</p> <p>③ 운영위원회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관계전문가, 관계공무원 또는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인 교직원, 학부모, 학생,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
			<p>제18조(건의사항 처리)</p> <p>① 위원장은 제16조 제3항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.</p> <p>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8조(건의사항 처리)</p> <p>① 위원장은 제16조 제3항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한다.</p> <p>③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됨에 따라 규정 조항 문구의 '자문'을 '심의'로 개정.</p>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0조(의안의 제출·발의)</p> <p>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,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.</p>	<p>제20조(의안의 제출·발의)</p> <p>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,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

			<p>제21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① 삭제 ② 삭제</p> <p>제24조(소위원회 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그 의결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학교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(이하 "상설소위원회"라 한다)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. ③ 안건 심의 또는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항의 소위원회에 학부모,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⑤ 소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할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되 상설소위원회는 연중 운영한다.</p> <p>제25조(서류제출 요구)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 할 수 있다. ② 삭제</p> <p>제26조(심의 또는 자문결과의 통보)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</p> <p>제27조(제척과 회피)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의 의결로 해당 위원이 관련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.</p> <p>제28조(보고 및 시정명령의 신청 등)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·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제2항 및 정관 제7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,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30조(학교내외의 자생조직)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(학부모회, 명예교사회, 녹색어머니회 등)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그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·발언할 수 있다.</p> <p>제7장 규정의 개정 제32조(규정의 개정)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.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. ③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</p> <p>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21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재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.</p> <p>제24조(소위원회 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그 의결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학교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(이하 "상설소위원회"라 한다)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. ③ 안건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항의 소위원회에 학부모,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⑤ 소위원회는 자문할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되 상설소위원회는 연중 운영한다.</p> <p>제25조(서류제출 요구) ①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 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감 및 해당 부장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다.</p> <p>제26조(자문결과의 통보)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자문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</p> <p>제27조(제척과 회피)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의 의결로 해당 위원이 관련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.</p> <p>제28조(보고 및 시정명령의 신청 등)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·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제2항 및 정관 제8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,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30조(학교내외의 자생조직)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고,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·발언할 수 있다.</p>	<p>「서울특별시립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반영</p> <p>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됨에 따라 규정 조항 문구의 '자문'을 '심의 또는 자문'으로 개정.</p> <p>학교법인 휘문의숙 정관 조항 변경으로 인한 개정.</p> <p>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개정.</p> <p>휘문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21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에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</p>
5	2024학년도 휘문고등학교 신입생 사진 촬영비 징수(안)	원안가결	<p>▷ 주요내용 1. 촬영인원: 전교생 418명(12개 학급) 2.. 제작규격: 3X4 규격(1인당 8매 제공) 3. 제작단가: 1인당 13,000원 4. 산출비용: 5,977,400원(부가세 포함)</p>		
6	2024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건	선출	<p>▷ 주요내용 - 지원에 의한 후보자: 3인</p>		

7	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	원안가결	▷ 주요내용 1. 변경안 가) 수입계획서 (단위: 천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사업명</th> <th>수입계획</th> <th>수입기간</th> <th>기부(모금대상)자</th> <th>기부(모금)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이월금</td> <td>250,473</td> <td>24.03.01.~25.02.28.</td> <td>이월금</td> <td>250,473</td> </tr> <tr> <td>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</td> <td>6,885</td> <td>24.03.01.~25.02.28.</td> <td>기타(개인, 단체 등)</td> <td>6,885</td> </tr> <tr> <td>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</td> <td>8,415</td> <td>24.03.01.~25.02.28.</td> <td>기타(개인, 단체 등)</td> <td>8,415</td> </tr> <tr> <td>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</td> <td>27,500</td> <td>24.03.01.~25.02.28.</td> <td>기타(개인, 단체 등)</td> <td>27,500</td> </tr> <tr> <td>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</td> <td>13,000</td> <td>24.03.01.~25.02.28.</td> <td>기타(개인, 단체 등)</td> <td>13,000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합계</td> <td>306,273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사업명	수입계획	수입기간	기부(모금대상)자	기부(모금)액	이월금	250,473	24.03.01.~25.02.28.	이월금	250,473	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	6,885	24.03.01.~25.02.28.	기타(개인, 단체 등)	6,885	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	8,415	24.03.01.~25.02.28.	기타(개인, 단체 등)	8,415	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	27,500	24.03.01.~25.02.28.	기타(개인, 단체 등)	27,500	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	13,000	24.03.01.~25.02.28.	기타(개인, 단체 등)	13,000	합계		
사업명	수입계획	수입기간	기부(모금대상)자	기부(모금)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월금	250,473	24.03.01.~25.02.28.	이월금	250,47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	6,885	24.03.01.~25.02.28.	기타(개인, 단체 등)	6,88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	8,415	24.03.01.~25.02.28.	기타(개인, 단체 등)	8,41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	27,500	24.03.01.~25.02.28.	기타(개인, 단체 등)	27,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	13,000	24.03.01.~25.02.28.	기타(개인, 단체 등)	13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계				306,27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	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지급(안)	원안가결	나) 지출계획서 (단위: 천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사업명</th> <th>지출계획</th> <th>지출시기</th> <th>사용용도</th> <th>세부사용내역</th> <th>지출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</td> <td>30,064</td> <td>24.03.01.~25.02.28.</td> <td>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</td> <td>학교 시설 보수 및 구입</td> <td>30,064</td> </tr> <tr> <td>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</td> <td>8,415</td> <td>24.03.01.~25.02.28.</td> <td>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</td> <td>교육용 기자재, 책 구입 등</td> <td>8,415</td> </tr> <tr> <td>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</td> <td>201,697</td> <td>24.03.01.~25.02.28.</td> <td>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</td> <td>장학금 지급, 학생들 동아리 및 축제활동 지원 등</td> <td>201,697</td> </tr> <tr> <td>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</td> <td>66,097</td> <td>24.03.01.~25.02.28.</td> <td>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</td> <td>학교체육활동 및 운동부 지원 등</td> <td>66,097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합계</td> <td>306,273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사업명	지출계획	지출시기	사용용도	세부사용내역	지출금액	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	30,064	24.03.01.~25.02.28.	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	학교 시설 보수 및 구입	30,064	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	8,415	24.03.01.~25.02.28.	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	교육용 기자재, 책 구입 등	8,415	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	201,697	24.03.01.~25.02.28.	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	장학금 지급, 학생들 동아리 및 축제활동 지원 등	201,697	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	66,097	24.03.01.~25.02.28.	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	학교체육활동 및 운동부 지원 등	66,097	합계		
사업명	지출계획	지출시기	사용용도	세부사용내역	지출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	30,064	24.03.01.~25.02.28.	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	학교 시설 보수 및 구입	30,06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	8,415	24.03.01.~25.02.28.	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	교육용 기자재, 책 구입 등	8,41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	201,697	24.03.01.~25.02.28.	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	장학금 지급, 학생들 동아리 및 축제활동 지원 등	201,69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	66,097	24.03.01.~25.02.28.	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	학교체육활동 및 운동부 지원 등	66,09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계					306,27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▷ 주요내용 1. 월봉 장학금 가. 지급 대상: 3학년 학생 1명 나. 지급 금액: 금6,592,000원(금육백오십구만이천원) o 산출 기초: 1,648,000원*4분기 다. 지급 사유: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습 태도가 바르고 언행이 모범인 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지급. 2. 누스테파노 장학금 가. 대상자: 3학년 학생 3명 나. 지급 금액: 금8,400,000원(금팔백사십만원) o 산출 기초: 2,800,000원(700,000원*4분기)*3명 다. 지급 사유: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 중 직전 학년인 2023년 내신 종합 성적이 2~4위인 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지급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2024. 4. 15.

회 문 고 등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위 원 장